

#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입에 따른 立法的 課題와 對應方案

李成德\*

## 차 례

### I. OECD 개요

### II. OECD 조직 및 가입절차

1. 機構
2. 가입절차

### III. OECD 가입에 따라 大韓民國이 부담하게 될 義務

1. 서론
2. 기본 조약상의 의무
3. 권고적 의무
4. 자유화 의무

### IV. OECD 가입, 특히 양 자유화규약 채택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내법 정비

1. 서론
2. 양 자유화규약 사항별 검토 대상 법률

### V. 결론

\*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I. OECD 개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9월 30일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역사는 조금 더 소급된다. 처음에는 1947년 6월 27일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16개국이 유럽경제협력위원회를 창설하였고 이어 1948년 미국 트루먼대통령의 유럽협력법 승인의 결과 탄생된 마샬플랜에 따라 서구 16개국은 OECD의 전신인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OEEC는 점차 확대 일로를 걷게 되었는데, 미국,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고 스페인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 유고슬라비아가 옵저버 지위를 갖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에 1960년 12월 14일 OECD협정문이 20개국에 의하여 서명되게 되고 다음해 9월 30일 발효하게 되었다. 현재 OECD에는 24개국<sup>1)</sup>이 가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를 위시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크 공화국 등 동구권 국가들이 가입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OECD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 성장과 고용의 증진 및 가맹국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둘째, 경제 원조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 셋째, 多者的 非差別的 원칙에 근거한 세계 무역의 확대가 그것이다.<sup>2)</sup>

1991년 경제통계에 의하면 OECD 가맹국의 총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하나 총 GDP는 전세계의 78%, 총 수출입 물량으로 나타난 교

---

1) 원가맹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며 일본은 1964년 4월 28일에, 핀란드는 1969년 1월 28일에, 호주는 1971년 6월 7일에, 뉴질랜드는 1973년 5월 29일에 가입하였고, 멕시코는 1994년 4월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ECD개황, 외무부, 5-11면 참조).

2) 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협약이라고 한다), 1조.

역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91%를 차지하는 관계로 비록 그 가맹국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의 그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다.<sup>3)</sup> 따라서 OECD내에서 채택된 수많은 지침들은 비록 연성법(soft law)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OECD 가맹국들의 사실상의 힘에 바탕을 두고 법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맹국 사이에서도 하나의 권고로서 의미를 띠는 지침들을 많은 국가들이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로 관념되게 되면 하나의 국제 관습법으로 명실상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침의 국제 관습법화 가능성은 OECD 가맹국이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들이인 연유로 더욱더 쉽게 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4)</sup>

OECD의 활동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간추려보면 초기 유럽의 부흥을 위한 경제 원조에서 시작하여 현재에는 세계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인류 전체의 생활 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거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선 선진국간에 있어서는 각각의 국내적 경제 정책이 국내적인 범위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국내적 경제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하게 된 바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든다든지 OECD산하의 소위원회가 勸告案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sup>5)</sup> 한편 OECD는 그 가맹국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소위 NIEs가 국제 무역 등 국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 그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세계 경제상 責任分擔論을 근거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 관계도 모색하고 있다.<sup>6)</sup> OECD내에서의 경제 정책의 조

3)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對OECD政策 추진현황, 1994, 5면.

4) J.H. Jackson & W.J. Dave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ses, Materials and Text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West Publishing Co., 1986, p.1065.

5)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1976년도의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라든지 최근 조선 사업과 관련하여 선박공급 과잉을 막기 위하여 선박 건조량을 제한할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한 권고 등이 그 예이다.

6) OECD와 NIEs의 관계에 대해서는,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OECD Industries*, Paris, 1988, 참조.

화는 다양한 구속력 없는 지침이나 권고 또는 구속력을 갖는 결정의 형태로 채택된 바 있다. GATT나 앞으로 탄생할 WTO가 그 규율대상을 주로 무역 문제에 두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OECD 내부의 규범들은 다국적기업의 규율, 수출 신용의 규율,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적 유통 규율, 자본 이동 자유화 및 경상 무역의 거래 자유화의 규율 등을 포함하는 관계로 그 규율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모든 OECD규범을 모두 일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기본적인 OECD협약상의 가맹국의 권리 및 의무와 자본 자유화 규약과 경상 무역의 거래 자유화 규약을 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1996년 OECD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인가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Ⅱ. OECD 조직 및 가입절차

### 1. 機構

OECD協約상의 그 조직은 아주 간단하다. 즉 OECD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Council)는 全加盟國으로 구성되며, 각료회의(각료이사회)나 상주대표회의(상주대표이사회)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OECD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sup>7)</sup> 각료회의는 통상 1년에 1회 정도 개최되는 데 그 회의에서 이사회는 1년의 임기로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임명하며 의장은 1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sup>8)</sup> 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주재 각 가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매월 2-3회 행하여지는 데 사무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러한 이사회는 주로 각 회원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 및 사회 문제 등을 논의하며, 기구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委員會나 特別 機關을 설

7) OECD협약, 7조.

8) *Ibid.*, 8조.

립하고 행정적으로도 예산 승인권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선출권 기타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직원 인사나 관련 제 규정 승인권을 갖는다. 위원회나 특별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협약은 명문으로 이사회는 OECD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및 기타의 補助機構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를 보좌하는 기구로 OECD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며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위 G7은 상임위원국이며 나머지 7개국은 매년 순번에 따라 호선된다. 집행위원회는 주로 이사회에 개최에 앞서 이사회에 심의를 준비하고 토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결정을 집행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행한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아주 다양한 위원회 및 특별 기관들을 설립한 바 있다. 1972년 국제 통화 제도 개혁 및 무역 자유화 진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회기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및 집행위원회 산하 경제 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 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등 26개의 전문 분야별 위원회와 보조적 성격을 갖는 국제에너지기구 운영위원회, 핵에너지기구운영위원회, 교육연구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및 도로연구계획 운영위원회 등의 4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산업자문위원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같은 민간 자문 기구도 갖고 있다. 또한 특수 財源에 의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 가입 절차나 목적에 있어 신축성을 갖는 국제에너지기구나 핵에너지기구와 같은 반독립적 부속기관도 가지고 있다.<sup>10)</sup>

사무총장은 5년의 임기로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그에 의하여 추천되어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 이상의 사무차장이나 차장보에 의하여 보좌를 받는다.<sup>11)</sup>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이사회에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보좌하며 이사회나 기타 기구의 기관

---

9) *Ibid.*, 9조.

10) OECD 기구에 대해서는, *List of Bod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andates Membership Officers*, Paris, 1991, 참조.

11) *Ibid.*, 10조 1항.

들에 대하여 제안을 행한다.<sup>12)</sup>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OECD의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의 관리를 임명하며 이들로 事務局이 구성된다. 사무총장을 위시하여 차장, 차장보 기타 관리들은 어떠한 국가들로부터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어떠한 지시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접수하여서도 아니된다.<sup>13)</sup>

이사회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몇가지의 법적 수단을 이용하는데 이들은 상호적인 滿場一致에 기한 합의를 근거로 하여 채택된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전원 의견 일치 방식은 OECD가 선진국간의 클럽적 성격을 띠는 폐쇄적 기구이기 때문에 생겨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가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사 결정 형태는 원칙적으로 가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決定(decision)<sup>14)</sup>과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 없는 勸告(recommendation) 및 OECD 자체가 그 가맹국 또는 非加盟國이나 타 국제 기구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나타난다.<sup>15)</sup> 이 이외에도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으로 OECD는 非加盟國이나 타 국제 기구와 의견 교환 및 관계를 수립·유지할 수 있으며, OECD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sup>16)</sup>

## 2. 가입절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OECD協約상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타 정부를 OECD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 초청 결정에 대하여서도 가맹국은 기권할 수는 있지만 기권으로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한다. 가입은 가입서를 기탁국인 프랑스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규정상으로는 가입 자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기존 가맹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출 것이 관행상으로 확립되어

12) *Ibid.*, 10조 2항.

13) *Ibid.*, 11조.

14) 각 가맹국은 결정을 自國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한 이후에야 그에 구속을 받는다. 또한 결정 채택시 기권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 결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ECD협약, 6조 2항 및 3항)

15) OECD협약, 5조.

16) *Ibid.*, 12조.

있다. 즉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多元的 民主主義 國家여야 하며,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한 人權을 존중하는 문명국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에는 OECD 가입전 가입 희망 국가는 그 국가의 수준이 기존 가맹국의 수준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아주 면밀히 검토받게 된다. 그러나 신규 가맹국이 기존의 OECD上的 제 경제적 의무를 즉각 수락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된다. 이러한 OECD의 내부적 가입 자격 심사 관행과 만장일치에 의한 가입 허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간의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조직 자체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996년경에 정식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憲法 제60조상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OECD協約은 우선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條約이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이다.<sup>17)</sup>

### Ⅲ. OECD 가입에 따라 大韓民國이 부담하게 될 義務

#### 1. 서론

OECD에 가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 OECD협약 자체에 근거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은 OECD 제 목적을 지지하고, 기구 내부 절차를 규정한 제 규약을 수락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GATT 11條國 및 IMF 8條國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또한 저개발국가를 원조하여야 하는 권고적 의무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경상 무역의 거래 자유화 및 자본 이동 자유화를 실시할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17) OECD에 가입하면 국민 총생산에서 감가상각 10%를 差減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기본 조약상의 의무

### 1) 일반적 의무

OECD협약상의 의무는 조약 가입에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OECD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국가도 國際機構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설립 조약이 정한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수락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OECD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최대한의 경제 성장, 고용 및 생활 수준을 달성하므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촉진시키며, 가맹국뿐 아니라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非加盟國의 안정적 인 경제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촉진시키며 마지막으로 국제 의무에 근거한 多者的 無差別의 原則에 근거하여 국제 무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한다. 첫째, 경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증대, 둘째, 과학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자원 개발 증진 및 연구 장려와 직업 훈련 증진, 셋째, 경제 성장 및 대내외적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행과 아울러 自國이나 타 가맹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개발 회피, 넷째,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 경상 지불에 대한 장애의 축소 또는 철폐 노력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의 유지 및 확대, 마지막으로, 기술 원조의 공여와 수출 시장의 확대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유의하여 적절한 수단,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자본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에 있는 가맹국 및 非加盟國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19)</sup>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가맹국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OECD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상호 협의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행동(coordinated action)도 취하여야 한다.<sup>20)</sup>

18) OECD협약, 제1조.

19) *Ibid.*, 제2조.

20) *Ibid.*, 제3조.



## 2) OECD가 채택한 法規의 수락 의무

OECD가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결을 거쳐 채택한 결정, 권고, 선언 또는 OECD가 체결한 조약 등이 내부적 諸 法規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제 법규들은 가맹국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과하고 있다. 현재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 법규는 160여개로 그 중 決定이 38개, 勸告가 107개, 宣言이 10개, 條約 등이 1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 법규는 내부 절차, OECD와 ILO, IMF 등 다른 국제 기구와의 관계, 과학 기술의 진흥, 관광 진흥, 이중 과세 방지, 각가맹국의 경제적 상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 무역 확대의 저해 요인인 다양한 규제의 철폐, 농수산물물의 국제규격,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sup>21)</sup> 원칙적으로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법규들을 수락하여야 하나 개별적인 法規마다 제정된 취지나 성격,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留保(reservation) 또는 適用免除(derogation)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다.

## 3) 분담금 부담 의무

OECD 가맹국은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산에는 전 가맹국이 그들의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제1부 비용과 이해 當事國이 부담하거나 특별 수입으로 충당되는 제2부 비용으로 구분된다. 각 가맹국의 분담금은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데 한 가맹국의 분담률이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분담률은 0.1%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분담금은 1993년 기준으로 1부 사업에 대해서는 1.32%이며 2부 사업은 참가 사업별로 1.30%에서 2.79%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sup>22)</sup>

21) OECD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Instruments in Force (OECD 발간물)를 보면 제 법규의 광범위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對OECD政策 추진현황, 32면.

### 3. 권고적 의무

#### 1) 개도국 개발 원조 제공 의무

開途國에 대한 개발 원조 의무는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가맹국에 대하여 GNP의 0.7% 이상을 개발원조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원조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부 기구로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두고 있다. 그에 대한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터키 등이 DAC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1991년 기준으로 경제 원조 규모는 GNP 대비 평균 0.33%이다. 199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 규모는 GNP 대비 0.04%로 그 평균에 많이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3)</sup>

#### 2) GATT 11條國 및 IMF 8條國으로서의 이행 의무

GATT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 왜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한들을 철폐할 것을 원칙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貿易制限措置 가운데서 11조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량 제한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량 제한 금지에 관해서는 몇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1조 규정에 있는 예외적 조치를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우리는 1990년 1월 1일부로 GATT 11條國으로 이행하였다고 한다.<sup>24)</sup> 이와 아울러,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MF 8條가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의무, 즉 첫째, 그 나라의 거주자가 대외 지불에 필요한 외화를 언제든지 자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경상 수지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의무, 둘째, 협정국 상호간에 상이한 결제 관계를 적용하여 타국을 배제한다든지 거래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함에 따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적용하는 등 차별적인 통화 조치의 철폐

23) *Ibid.*, p.34.

24) *Ibid.*, p.33.

의무, 마지막으로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통화 잔고가 금 또는 외화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그것이다. 이러한 IMF 8條國으로서의 의무는 1988년 12월부터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밝히고 있다.<sup>25)</sup> 설사 이러한 GATT 11條國 또는 IMF 8條國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고 지키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加入審査를 하는 시점에서나 가입 이후 여러가지 협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만약 우리나라가 양 권고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현 시점에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직접적·간접적 수량제한 관행들은 OECD 가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도 더욱더 그 철폐가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OECD에 가입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보나 적용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兩大 자유화 규약에 가입을 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금융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IMF 8條상의 의무를 분명히 초과하는 것으로 세심한 제도상의 정비가 요구된다.

#### 4. 자유화 의무

OECD는 1961년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처음 채택한 이래 1989년 이 兩大 自由化規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兩大 자유화규약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결정(decision)의 형태로 채택되었다.<sup>26)</sup> GATT가 재화 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sup>27)</sup> IMF는 경상 거래에 따른 결제수단인 외화

25) *Ibid.*

26) OECD, *Introduction to the OECD Codes of Liberalisation*, 1987, p.12.

27) WTO체제가 등장하면 GATT의 재화 무역 자유화 이념을 서비스 무역에도 확대될 것이다. WTO는 GATS라는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세계 무역 질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은 효과적인 經濟 協力과 보다 자유로운 국제 경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회원국간의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통지(notification), 심사(examination), 및 협의(consultation) 과정을 두고 있다.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은 부속서 A에 자유화 대상 항목으로 11개의 대항목과 57개의 소항목을 두고 있으며,<sup>28)</sup>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부속서 A에 자유화 항목으로 16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을 두고 있다.<sup>29)</sup>

양대 자유화규약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원칙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 무차별 대우의 원칙 및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이 그것이다.

### 1) 내국민 대우의 원칙<sup>30)</sup>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자유화라는 개념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연유하는 의무이다. 왜냐하면 양대 자유화규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회원국들의 거주자들이 마치 한 국가의 거주자인 것처럼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31)</sup> 회원국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비거주

28) 11개 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및 산업 활동, 2. 무역, 3. 운송, 4. 보험, 5. 은행 및 금융 서비스, 6. 자본 소득, 7. 여행 및 관광, 8. 시청각 관련 서비스, 9. 개인소득 및 지출, 10. 공공의 수입 및 지출, 11. 기타 일반.

29) 16개의 대항목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직접 투자, 2. 직접 투자의 청산, 3. 부동산 거래, 4. 자본 시장에서의 증권 거래, 5. 단기 자금 시장 거래, 6. 기타 양도 가능 금융 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7. 공동투자 증권의 거래, 8. 국제 무역 및 용역 관련 신용, 9.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10. 담보 보증 및 Back-up Facility 금융, 11. 예금 계정 거래, 12. 외환 거래, 13. 생명 보험, 14. 개인적 자본 이동, 15. 자본의 실물 이동, 16. 비거주자 소유 봉쇄자금의 처분.

30) 양 자유화규약 자체에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대내 직접 투자 자유화 항목에 포함된 회사 설립권 관련 사항과 경상무역외거래규약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공급 기업의 해외 지사와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자유화 항목에는 나타나고 있다.

31) OECD, *Introduction to the OECD Codes of Liberalisation*, 1987, p.12.

자에게 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우호 통상 항해조약과 같은 양자 조약<sup>32)</sup> 뿐만 아니라 GATT<sup>33)</sup>와 같은 세계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약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써 경상 무역외 거래라든지 자본 이동 자유화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특히 양대 자유화규약에 있어서는 자본의 직접 투자라든지 은행, 보험 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 조건 등에 관한 규제를 자국민에 대한 규제보다 더 제한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회원국들에게 부과된다.

## 2) 무차별 대우의 원칙

무차별 대우의 원칙은 회원국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s treatment)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어느 한 회원국이 타 회원국에게 일정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 비록 여타 회원국이 그와 동일한 정도의 대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회원국에게 그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양대 자유화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각 부속서 A의 범위내에서 경상 무역외 거래의 승인에 있어서나 어느 수준까지 자유화되어 있는 거래의 체결, 실시 및 송금과 관련된 승인을 함에 있어 타 회원국이 다른 정도의 자유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sup>34)</sup> 이에 대한 예외로서 양대 규약은 관세상 또는 특수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規約 2조(a)항에 근거한 자유화 조치, 즉 부속서 A상의 조치 이외의 다른 자유화 조치를 타 회원국에 확대시키지 않고 동 체제 회원국 상호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예외규정은 GATT XXIV조상의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적용하여 전부가 OECD회원국인 유럽연합 가맹국들 상호간에 적용되는 자본 이동이나 경상

32) e.g.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우호통상및항해조약, 제4조.

33) e.g. GATT 3조.

34) 양 자유화규약 각 9조.

35) *Ibid.*, 각 10조.

무역의 거래 자유화 정도를 타 OECD회원국에는 적용을 배제하자는 취지이다.<sup>36)</sup> 이에 더하여,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부속서 E, “대내 직접 투자와 관련된 相互主義 및 無差別主義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대내 직접 투자와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상호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속서 E상의 예외는 금융 및 재정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회원국이 각자 독특한 기구 체제를 가지고 있는 현실하에서 오히려 상호주의에 의함으로써 보다 자유화의 정도가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하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조치나 관행도 중국적으로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OECD에 정기적으로 통지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점진적 자유화

양대 자유화규약은 그 규정들의 내용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자유화 정도를 각 회원국의 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자유화는 유보(reservation)의 형태 또는 適用免除(derog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보나 적용면제는 자유화를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원국이 양 規約上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부담들을 장기간에 걸쳐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관념되고 있다.<sup>37)</sup>

#### (1) 유보 가능성

즉시 자유화를 할 수 없는 회원국은 개별 사안별로 자유화 유보를 할 수 있다.<sup>38)</sup> 유보는 자유화규약에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특정적인 새로운 의무

36)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도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37) OECD, *Introduction to the Codes of Liberalisation*, 1987, p.14.

38) 1992년 2월말 현재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 평균 유보율은 13.2%(1990년의 9.5%에서 증대)이고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평균 유보율은 같은 시점에서 17.1%이다. 현재 양 규약에 대하여 평균 유보율 이하로 유보를 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며 평균 유보율 이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를 회원국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때 또는 자유화규약에 새로운 의무를 첨가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sup>39)</sup> 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유보사유를 OECD에 통고하여야 하며<sup>40)</sup> 유보 회원국은 유보사항에 대하여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OECD의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sup>41)</sup> 또한 유보사항을 철회한 경우에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부속서 A상의 List B에<sup>42)</sup>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유보를 할 수 없다.

## (2) 적용면제

적용면제는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회원국을 유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있어서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자 일시적으로 자유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면제는 회원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악화나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또는 재정상의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증

---

이다(김태준, OECD 경상 무역의 거래 및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7. 42, 46, 53면).

39) 양 자유화규약 각 2조(b)항.

40) 양 자유화규약 11조.

41) 양 자유화규약 12조.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는 유보와 적용면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20조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 19조). 유보와 적용면제에 관한 심사는 경상 무역의 거래의 경우에는 사항별로 이루어지며 자본 이동의 경우에는 국가를 단위로 행하여진다. 이렇게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경상 무역의 거래에 있어서 제한적 조치는 주로 필름, 해상운송, 보험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것이며 자본 이동에 관하여 제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사항들은 상호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이나 그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2) List B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거래중 비거주자의 국내 거래 시 신축 또는 매수; 거주자의 해외 거래시 신축 또는 매수, 2.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전 사항, 3. 기타 양도 증서와 비증권 권리의 거래에 관한 전 사항, 4. 국제 상거래 또는 국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信用中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상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에 관한 전 사항, 6. 담보, 보증 및 Back-up Facility 금융 중 국제 무역, 국제 경상 무역의 거래 또는 국제 자본 이동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Back-up Facility 금융, 7. 예금 계정 거래 중 거주자의 비거주 기관에 개설된 계정을 통한 거래, 8. 외국환 거래, 9. 개인적 자본 이동중 상금 등이 그것이다.

명하는 경우에 제한을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적용면제는 전면적 적용면제와 특정 자유화 항목의 적용면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 및 재정 금융 상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부속서 A상의 자유화 의무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다.<sup>43)</sup>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자국에 중대한 경제 및 재정 금융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통화 리저브를 포함하는 종합 국제 수지가 그 속도 및 상황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당해 회원국은 관련 자유화 조치를 철회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sup>44)</sup> 국제 수지에 근거하여 자유화 조치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정지후 12개월 후에는 원칙적으로 양 자유화규약 2조(a)항이 요구하는 부속서 A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 무역외 거래중 관광 여행과 관련된 거래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유화 조치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본 이동 자유화와 관련하여 정지된 거래 및 송금에 대해서도 적정한도 내에서 다시 자유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시 정지는 18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sup>45)</sup>

전면적 적용면제는 특정 자유화 항목의 적용면제이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그 이유와 조치 사실을 OECD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에 근거하여 OECD는 적용면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적용면제의 경우에는 특히 당해 적용면제와 관련이 없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적용면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상황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OECD에 이러한 문제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sup>46)</sup> 이러한 적용면제는 제한된 시간적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통상 18개월을 넘지 아니한다.<sup>47)</sup> 또한 OECD는 자유화 체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43) 양 자유화규약 7조(a)항.

44) 양 자유화규약 7조(b)(c)항.

45) 양 자유화규약 7조(d)항.

46) 양 자유화규약 7조(a)(b)(d)항.

47) OECD, *Introduction to the Codes of Liberalisation*, 1987, p.14.



## Ⅳ. OECD 가입, 특히 양 자유화규약 채택과 관련하여 필요한 국내법 정비

### 1. 서론

OECD 본 협약이나 기타 구속력 있는 또는 구속력 없는 모든 OECD규약들 예를 들어 원조 조건에 관한 권고, 선박 수출 신용 조건에 관한 양해, 조선 산업에 관한 정부 지원 조건에 관한 권고, 투자 신탁의 표준 준칙, 무역 서약,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무역 정책 선언, 정보 유통 자유화 선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등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은 법적 또는 사실상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적 구속은 국내적인 시행을 요구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 국내 제 법규가 그러한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하에서는 양 자유화규약을 채택하는 경우에 국내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 2. 양 자유화규약 사항별 검토 대상 법률

#### 1)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관련 사항

이하에서는 자유화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전술한 유보나 적용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유화 정도와 그 상태하에서 요구되는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논술하겠다.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의 자유화는 주로 외국환관리법, 동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바 이러한 제 법규들을 기본으로 설명한다.

## (1) 업무 및 산업 활동

수선 및 조립; 가공, 마무리, 계약하에 있는 작업의 가공 및 기타 동일 성질의 용역; 기술도입; 저작권 사용료, 특허, 의장, 상표 및 발명; 급료 및 임금; 해외에 위치한 母會社의 일반 경비에 대한 子會社의 분담금의 송금 및 그 반대 경우의 송금 등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의 송금은 주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sup>48)</sup> 다만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외국 건설 회사가 국내 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존의 업체와 합작 투자를 위한 회사 설립이 요구되고, 건설업법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sup>49)</sup> 이와 관련한 국제 거래는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면 유보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자유화가 실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는 외국 회사가 합작의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지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기술 도입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히 외자도입법상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천제, 신고제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으로 충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50)</sup>

## (2) 무역

외국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수수료 및 중개료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 등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48) 부분 자유화의 예는 기술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상 기술 도입의 대가가 30만불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의 수출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기술용역육성법이나 외자도입법상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공업소유권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49) 건설업법 제6조.

50) 김태준, OECD 경상 무역외 거래 및 자본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125-126면.

### (3) 운송

해상 화물 운송; 내륙 수로 화물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 해상, 내륙 수로, 도로 운송의 경상 운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구입 및 지급 그리고 항공기 및 수송 장비의 수선 등을 포함하는 항공 운송과 관련된 경상 및 고정 비용의 지급; 경상 운항에 필요한 수선 및 유지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 수단의 수선 및 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의 두 항목에 대하여서는 자유화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내륙 수로 화물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자유화가 유보되어 있고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운산업육성법<sup>51)</sup> 11개 지정 수출입 화물에 대한 국적선 이용 제도(웨이버 제도) 정기선 화물 국적선 이용 제도를 두고 있는 관계로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륙 수로 운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문제 삼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도로 수송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sup>52)</sup>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서도 지정 화물에 대한 국적선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철폐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sup>53)</sup>

### (4) 보험

사회 보장 및 사회 보험; 적하 보험; 생명 보험; 기타 보험; 재보험 및 재보험; 외국 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건 등이 관련 항목이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 현재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 보장 및 사회 보험의 경우 사회 보장 기여금이나 사회 보험료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 생명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소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再保險

51) 해운산업육성법 제16조.

52) 이러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1997년 1월 1일까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3) 국적선 이용 제도는 1995년 1월 1일 폐지할 계획을 지정 화물 제도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다.

出財의 경우 국내 회사 우선 출재 의무 등이 자유화에 대한 제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再保險의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우선 출재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동등 대우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 (5)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지불 서비스; 은행 및 투자 서비스; 결제 및 청산 서비스와 보관 및 예치 서비스; 자산 관리; 투자 자문 및 대리 서비스; 부과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건 등이 관련 자유화 항목이다. 우선 이러한 모든 항목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은행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해당 은행이 지불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대금 결제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 것, 비거주 외국 금융 기관이 국내 거주자에게 인수 서비스나 외환 등과 같은 금융 자산의 중개 서비스 및 자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 거주자의 해외 결제 및 청산 시스템에의 참여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보관 및 예치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 사항으로 한 것, 자산 관리 서비스를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은행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관련 사무소의 설치를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CD의 발행 한도와 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점, 신탁 업무 취급에 대한 일부 제한 등이 자유화가 유보되어 있는 부분의 예들이다. 이러한 부분적으로 자유화가 유보된 항목들 가운데서도 특히 자산 관리 및 투자 자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가 더 요구되며 외국은행의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한 동등 대우의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달성은 되어 있으나 보다 완벽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은행에 대한 동등 대우와 관련하여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CD, 거액 상업어음 매출, 거액 무역어음 일반 매출, 거액 환매채, 거액 기업어음, 및 중개어음의 발행 한도와 만기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案은 이러한 자유화 방향과 일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54) 조선일보 1994. 4. 21자, 10면.

### (6) 자본소득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이익 배당금 및 분배금;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자유화 대상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으나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증권 및 국민인 비거주자가 취득한 내국 통화 표시 증권의 배당금의 송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 (7) 여행 및 관광

거주자의 해외 여행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여행 경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신용 카드에 의한 경비 지급은 정해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거주자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은행권을 국외지점에서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8) 필름

국산 영화, 합작 영화의 수출 또는 외국 영화의 수입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외국 영화의 원판을 수입하여 복사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본에서 제작된 시청각물의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는 무차별 대우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검토가 요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차별 대우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9) 개인 소득 및 지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소득; 법률상의 의무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양비 지출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의 생계비 보조; 이주자 송금; 해외의 보유 재산에 대한 경상 유지 및 보수; 해외로의 소액 송금;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음악 관련 출판물의 구독 및 구매; 스포츠 상금 및 기타 경기 상금 등이 자유화 대상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 특히, 이주자 송금이나 소

액 송금의 경우 미화 5,000불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하고 있어 자유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자유화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송금제한액의 범위 下限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10) 공공수입 및 지출

조세; 정부 지출; 공공 운수 및 우편, 전신 및 전화 서비스 관련 청산; 영사 수입 등이 자유화 대상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 (11) 기타 일반

모든 매체와의 광고 계약; 재판 비용; 손해 배상금; 벌금; 협회, 클럽 및 기타 단체 가입; 전문 용역; 계약 해제나 초과 수령에 따른 환불; 특허 및 상품 등록 등이 자유화 대상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거나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유화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sup>55)</sup>

### 2)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관련 상황

경상 무역외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보나 적용면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자본 이동 자유화 정도를 검토하고 이 규약이 요구하는 정도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외자도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외국인투자예관규정과 외국환관리법, 동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 등이 주된 검토 대상 법규들이 될 것이다.

55) 이 항목들과 관련하여 자유화가 유보되어 있는 것의 예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 의해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여론 조사 관련 용역, 컨설팅 용역으로서 상담 대상 거래 행위가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금융 보험과 관련되는 경우 등이다.

### (1) 직접 투자

이는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대별되며 전자는 신주취득에 의한 직접 투자, 기존 주식 취득에 의한 직접 투자, 지사 설치 등에 의한 직접 투자,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에 의한 직접 투자로 구분되며, 후자는 新株나 기존 株 취득 또는 장기 대부에 의한 해외 투자와 해외 지사 설치 등에 의한 해외 투자로 구분된다. 외국인의 투자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상 공익, 보건, 미풍양속 등의 이유로 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데 1993년 7월 현재 1148개 업종 중 208개 업종이 투자 제한 대상이며<sup>56)</sup> 3년 이상의 차관계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이나 현실적으로 통화 관리나 국제 수지를 이유로 인가가 부여되지 않는 실정이다.<sup>57)</sup> 또한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해운법, 전파법, 항공법, 석유사업법 등이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sup>58)</sup> 내국인의 해외 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외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응모하거나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로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 금액이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 또는 자체 이익 유보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대신한다. 해외 지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환은행의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또한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외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투자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자유화가 유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의 자유화를 위하여 특히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규정 등의 대폭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 (2) 직접 투자의 청산

이는 거주자의 해외 투자 청산과 비거주자의 직접 투자 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현재 자유화되어 있다.

56) 외자도입법 제9조.

57)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對 OECD 政策 추진 현황, 56면.

58) 방송법 제8조, 제40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해운법 제26조의2, 전파법 제5조, 항공법 제6조, 제147조, 석유사업법 제6조.

### (3) 부동산 거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비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매입 및 매각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그 처분은 자유화 사항이다.<sup>59)</sup>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매각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매입의 경우에는 국외 점포의 설치 인가를 받은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있다.

### (4) 자본 시장에서의 증권 거래

국내 증권의 해외 자본 시장 참여, 외국 증권의 국내 시장에서의 참여,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 매매, 거주자의 국외에서의 증권 매매 등이 관련 항목이다. 발행 요건을 갖춘 해외 증권의 발행 모집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나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증권의 해외시장 상장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발행된 증권을 제외하고는 상장이 금지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 모집 및 발행과 국내 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증권 상장도 모두 재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은 국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일정한 제한된 범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며 매각의 경우에도 취득이 허용된 증권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만 가능하다. 거주자의 해외 거래는 외국환은행과 기관투자가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제한들도 점차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들이다.

### (5)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거래

국내 증권 및 기타 증서의 해외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참여, 외국 증권 및 기타 증서의 국내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참여,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거래,

---

59)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 등이 관련 항목들이다. 회전 발행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발행되는 각종 단기 채무 증서만을 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외화 증권을 발행 모집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행은 금지된다.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 투자 전용 회사가 국내 단기 금융 상품을 매매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거주자의 해외 거래에 있어서도 외국환 은행만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 자금 또는 기타 외국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을 뿐이다.

#### (6) 기타 양도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국내 금융 수단 및 권리의 해외 금융 시장 참여, 외국 금융 수단 및 권리의 국내 금융 시장 참여,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거래,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 등으로 분류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실수요 거래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 선물 중개 업무 지정 기관을 통해 세계 51개 금융 선물거래소와 거래 가능한 것과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금융시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금융시장에의 상장도 해외에서 발행된 증서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내 금융시장 참여의 경우에도 외국환은행만이 비거주자와 외국 통화간 장외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며, 증서 등의 국내 상장도 불가능하다. 비거주자의 국내 거래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 통화간에 장외 금융선물거래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 거래도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7)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국내공동투자증권의 외국 증권 시장에서의 참여, 해외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 시장에서의 참여,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매매,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매매 등이 관련 항목이다. 외국 증권시장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허가를 받은 자만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수익증권을 발행·모집·판매할 수 있을 뿐이며, 해외에서 발행이 허용된 수

익증권 이외의 국내공동투자증권의 공인 외국 증권시장 상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내 시장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비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에서 공동투자증권을 발행·모집할 수 있으나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공동투자증권의 국내 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증권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매매의 경우는 대부분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거주자에 의한 해외공동투자증권의 매수는 증권 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의 경우와 동일하고 매각은 매수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항목들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뿐 아니라 선물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국제 무역 및 용역 제공 관련 신용

이는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양자는 모두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으로 나누어진다. 거주자가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또는 반대의 형태로 허용된다. 반면, 원인이 되는 거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신용은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분 간주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의한 일정한 외화 표시 보증만이 허용된다.

#### (9)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신용 및 대부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상환 기간 1년 이하의 조건에 따른 외화 자금의 차입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신용 등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제공하는 미화 2,000불 미만의 신용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0) 담보, 보증 및 Back-up Facility 금융

국제 무역 및 무역외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거주자가 개입된 자

본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 담보 및 보증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현지 법인 및 해외 지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域外 金融 貸出에 관한 담보로 비거주자가 외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Back-up Facility 금융의 경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외화 증권 국제 인수단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제 무역 및 무역의 거래와 국제 자본 거래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해당 국제 거래에 거주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 및 보증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여신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현지 법인 및 해외 지사 등의 현지 금융 담보를 위한 대외 외화 표시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 등만이 자유화되어 있다. Back-up Facility 금융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경우는 證券去來法상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외화 증권 국제 인수단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11) 예금 계정 거래

비거주자의 국내 거주 금융 기관과의 계정 거래는 그것이 내국 통화로 행해지거나 외국 통화로 행해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거주자의 비거주 금융 기관과의 계정 운영의 경우에는 그것이 국내 표시 통화로 행하여지면 전면적으로 금지되나 외국 표시 통화로 행해지면 허용된다. 거주자의 비거주 금융 기관과의 계정 운영은 List B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일단 자유화한 이후에도 재유보를 할 수 있는 항목이다.

### (12) 외환 거래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 거래의 경우, 국내 통화를 외국 통화로 매수하는 경우는 외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실수요 범위내의 先物換 去來는 자유화되어 있고 국내 통화로 외국 통화를 매수하는 때에는 미화 500불이내인 경우 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자에 의한 실수요 범위내의 先物換 去來나 공인된 거래를 통한 외국환 매각 실적 범위내에서 자유화되어 있고 외국 통화간의 교환도 자유화되어 있다. 거주자의 해외 외환 거래의 경우는 내국 통화로 외국 통화를 매수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외국 통화간의 교환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 (13) 생명 보험

비거주 보험자가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 연금의 송금 및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 연금의 송금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 (14) 개인적 자본 이동

개인적 대부, 증여 및 기증, 결혼 지참금, 상속 및 유증, 이주자의 원거주지국에서의 채무의 변제, 해외 이주자 소유 국내 자산의 해외 이전, 상금,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상금이나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 항목은 자유화되어 있고 개인적 대부 행위는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지참금의 경우 미화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거나 이민자에 의한 원거주지국에서의 채무 변제는 미화 10만불미만의 경우에는 자유화되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 (15) 자본의 실물 이동

유가 증권 및 기타 자본적 권리 증서의 수입·수출과 지불 수단 수입·수출 모두 일정한 경우에만 자유화되어 있다. 즉 자본 거래의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 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요한다.

#### (16) 비거주자 소유 봉쇄 자금의 처분

봉쇄 자금의 송금, 국내 사용, 비거주자간의 양도 등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자본 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고시한 경우에만 허가를 얻어 송금, 사용, 양도가 가능하므로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자 보유 국내 자금에 대하여 봉쇄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봉쇄 자금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자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sup>60)</sup>

## V. 결 론

우리 정부는 올해안에 OECD 가입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sup>61)</sup> 이러한 가입 신청에 따라 예정대로 1996년 가입이 확정되면 OECD협약 및 그 이외의 구속력 있는 부수적 결정들이 정하는 기본적 권리 의무를 누리거나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선 OECD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무역, 무역외 거래 기타 자본 거래 등에 대한 국제적 법규 및 정책의 수립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될 것이나 이러한 형식적인 참여의 보장이 여전히 경제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와 자본 이동 자유화와 관련하여서 물론 가입 확정 전에 유보 또는 적용면제에 의하여 어느 정도

60) 김태준, OECD 경상 무역외 거래 및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122면.

61) 동아일보 1994. 5. 13자.

융통성있게 우리의 개방 정도를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되어야 할 처지이므로 우리의 국가 경제 능력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우리의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 부처 상호간에 있었던 현재의 우리의 경상 무역외 거래 및 자본 이동 자유화 정도에 관한 논쟁을 볼 때 우리의 자유화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자유화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sup>62)</sup> 또한 開發途上國 지위의 확보와 관련하여 OECD 가입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물론 OECD 가입으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지위를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sup>63)</sup> OECD 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함축하는 의미는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수 사안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기존의 GATT체제에서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 중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開發途上國의 지위를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기구들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OECD에 가입한다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62) 경제기획원은 경상 무역외 거래 자유화 및 자본 이동 자유화의 정도가 각각 38.6%, 12.1%에 달하므로 OECD 평균 자유화율인 87.7%, 83.5%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국내 제도 정비를 요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재무부는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자유화를 계산 방식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1994. 3. 17자)

63) 환경 분야에 대하여 터키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